

# 과천도시공사 내부평가규정

제정 2019.12.31. 규정 제21호  
개정 2021.11.26. 규정 제70호  
개정 2022.5.11. 규정 제8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단위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내부평가에 관하여 상위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평가위원회 구성)** ①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 또는 부문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되 2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5.11.)

1.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
2.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
3.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4. 기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평가위원회의 임무)** 평가위원회는 내부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가체계별 가중치 및 지표의 결정, 변경 등
2.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

3. 내부평가편람에 관한 사항

4. 내부평가 방법개선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

5. 기타 내부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소집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**제6조(의결방법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임직원의 출석 등)**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내부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경영실적평가 및 보고서 등)** ① 내부평가 주관부서는 당해년도 12월 중으로 내부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피평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부평가의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단위사업별 부서장은 당해년도 경영실적(내부평가 수행실적)을 평가편람(BSC 평가지표 등)의 지표별로 작성하여 평가실시 14일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성과관리시스템(BSC)으로 평가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단위사업별 부서장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부평가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내부평가편람)** ① 주관부서는 내부평가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여 내부평가편람(지침)을 작성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당해년도 1월말까지 내부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내부평가 지표개발 지침을 각 부서별로 통보하고 각 부서는 소관 업무별 내부평가 지표 개선(안)을 작성하여 2월말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평가지표 개선(안)을 참고하여 당해년도

내부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내부평가위원회 심의 및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3월 말일 까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직개편 및 평가지표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 내부평가편람 작성 등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평가방법)** 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평가위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모든 평가위원으로부터 받는다.

② 평가위원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근거로 보고의 성실성, 정확성 여부를 1차 검증한 후 소관사항에 관하여 당해연도 평가기준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.

③ 위원장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당해연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단위별 등급을 결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.

**제10조의2(평가결과 이의신청)** ① 성과관리시스템(BSC)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가 공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(BSC)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성과관리시스템(BSC) 주관부서는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성과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.

【본조신설 2021.11.26.】

**제11조(실비보상)** 내부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(평가결과 반영)** 평가결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에 반영, 특별호봉승급실시 및 포상금 지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문책 또는 인사규정에 따라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(위원회 사무관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내부평가담당 직원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 심의의결서 작성 및 관리
3. 기타 위원회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

**제14조(의사록 등의 관리 및 보존)** 위원회의 의사록 등은 내부평가담당부서에서 관리

및 보존한다.

**부 칙** (제정 2021.12.31. 규정 제21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 (개정 2021.11.26. 규정 제70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 (개정 2022.5.11. 규정 제82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의 “상임이사(본부장)”를 “본부장 또는 부문장”으로 한다.

⑦생략

(별지 제1호서식)

## 서 약 서 (제10조제1항 관련)

본인은 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.

-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하며 개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.
- 평가 업무 중 취득한 공사의 정보 및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.

년 월 일

서약자 소속 :

직책 :

성명 :

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